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취업 전,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에서 직무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형 1개월

참여수당 (월 2.1만원)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인턴형 3개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1유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분		체험형	인턴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원기간		30일 (최소 20일 이상)	3개월 (최소 1개월 이상)
일경험 시간		1일 4시간 원칙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원칙
지원금	참여자	참여수당 1일 2.1만원	기업과 협의된 임금
	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10만원	참여자 1인당 임금 월 최대 182만원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직무내용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연계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신청 자격 및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기간 내 참여가능)

1유형: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 2유형: 2단계 운영 기간 내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에게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자

- 일경험 진단결과에 따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자
- 예외)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상담사가 판단시 참여 가능

참여자 제한사유

-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제형형 일경험 프로그램 3회 이상 반복 참여희망하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관계인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자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5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일부 요건 해당 시 예외적 참여허용

- 기업별: 벤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 업종별: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 업종

참여신청서 작성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필수
- IAP 수립 당시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경험 지원 필요한 경우 IAP 변경 후 참여가능